

무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논의를 거부하였다. 결국 문제의식과 전망에 관한 토론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논쟁만이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인권기구의 개념과 “파리원칙”的 내용, 외국의 입법례¹²⁴⁾ 등에 관하여 왜곡된 인용과 주장이 이루어지면서 논의는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에 걸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인권의식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건설적 대화를 촉진

나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논의였고 다른 하나는 국민회의 인권위원회의 논의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 1998년 9월부터 11월까지 법무부 인권과장과 비롯하여 관련된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이 주일 단위로 7회에 걸친 비공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그 논의를 토대로 참가자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국민회의는 인권위원회내에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민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회의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 과정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초청된 사람들일 뿐이었다는 점, 그리고 정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단체 사이의 공식적인 협의와 토론으로 발전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국민회의는 아무런 공식 절차와 설명도 스스로 만든 시안을 폐기하고 법무부안에 합의해 버렸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124. 여러 나라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입법과 활동을 비교하여 분석한 글로 가장 종합적인 것은 Brian Burdekin, 앞의 글(UN Doc. A/CONF.157/PC/92/Add. 3, 18 May 1993)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들의 협의체인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的 홈페이지(<http://www.apf.hreoc.gov.au/>)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입법과 활동상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998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Third Meeting of the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에 제출된 자료, Practice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Receiving, Investigating and Resolving Complaints는 아시아 국가인권기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절차를 상세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아시아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 경험을 인권단체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은 Wong Kai Shing, The Preliminary Report 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in Asia,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sian Legal Resource Centre (1996 January)와 South Asia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ASIA PACIFIC REGION (March 1998); HURIGHTS OSAKA, Government Human Righ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uman Rights in Asian Cultures Continuity and Change(ed. by Jefferson R. Plantilla & Sebasti L. Raj, SJ), HURIGHTS OSAKA(1997), 323-374등이 있다.

하는 데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나. 인권기구의 개념과 배경에 대한 오해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의 형태에 “법무부내에 인권담당부서를 두는 방안”, “별도의 국가기구로 하는 방안”, 그리고 “독립적 특수법인형태로 하는 방안”의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¹²⁵⁾ “남북 대치 등 현재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미국, 일본과 같이 법무부의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여기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함이 바람직”한데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 등을 고려하여¹²⁶⁾ 법인형태의 인권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인권기구는 기껏해야 법무부 인권과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처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 위상과 구조, 권한과 기능에 이르기 까지 많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법무부의 견해는 인권기구의 기본개념 조차도 오해 또는 왜곡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첫째, “법무부내에 인권담당부서를 두는 방안”은 법무부의 내부조직 구성의 문제일 뿐,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인권기구”¹²⁷⁾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법무부 인권과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인권기구는 행정부, 특히 법무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무부내에 인권담당부서를 두는 방안”이 “국가인권기구”的 한 형태라는 법무부의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¹²⁸⁾.

125. 法務部, 人權法 試案과 立法 推進計劃 (1998.9.24.), 7-10쪽. 이하 “법무부 추진계획”으로 인용.

126. 法務部, 人權委의 性格과 權限 등에 관한 爭點檢討 (1998.10.), 3쪽. 이하 “법무부 쟁점 검토”로 인용.

127. UN HANDBOOK, 36-39항 참조.

128.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중 “법무부내에 인권담당부서를 두는 형태”로 “미국 법무성 민권국,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을 사례로 들고 있다. 법무부 추진계획, 7쪽. 그러나 “법무부내에 인권담당부서를 두는” 것은 법무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국

둘째,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독립된 국가기관인 “미국 시민권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Civil Rights)”인데¹²⁹⁾ 법무부는 이 사실을 감추고 법무성 민권국이 “국가인권기구”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셋째, “남북 대치 등 현재의 특수상황”을 들어 “법무부내에 인권담당부서를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인권기구의 설치에 반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대치 등 현재의 특수상황”은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독립한 인권기구를 설치할 당위성을 제시할 뿐, 이에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부의 주장은, 인권의 보호가 곧 “국가안보”를 저해하며, 뒤집어 말하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믿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가인권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법무부의 인권담당부서도 국가인권기구가 아니다.

129. 미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법무성 민권국이 아니라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라 설립된 “미국 시민권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인권기구와는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는 헌법의 평등권 침해를 조사하며 차별행위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서와 권고를 제출할 수 있다. 8명의 위원들 중 4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2명은 상원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2명은 하원의장이 임명하는데, 같은 당의 당원이 4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정치·사회적 다원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위원과 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2,000여명의 직원이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완전하게(fully)”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종인과 참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무부가 “시민권위원회”를 거론하지 않고 법무성 민권국을 미국의 국가인권기구라고 주장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42 USC Title 42, Chapter 20A - Civil Rights Commission, Sec. 1975, 1975a, 1975b; Paris Workshop Report, UN Doc. E/CN.4/1992/43, 16 December 1991, 28, 35, 65-69항 참조. 한편 일본은 현재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 인권기구의 “보충성”문제 혹은 “틈새”론

법무부 법안에 따르면 “국민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법무부의 업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법무부는 인권기구가 기존 국가기관의 “보충기구”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인권위는 기존 국가기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있는 부분, 즉 ‘틈새(shortcomings)’를 보충하기 위한 기구”이며 “인권보장에 관한 제1차적, 최종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이를 감시·보충하는 책임이 인권위에 있는 것”이라고¹³⁰⁾ 주장하였다. 따라서, 법무부의 주장에 의하면,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인권옹호”의 주무부서이므로, 인권기구는 법무부의 기능을 보충하는 기구로서 “법인”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인권기구는 물론 기존의 국가기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권기구가 기존의 국가기구와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는 파리원칙을 왜곡하고 있다. 유엔의 원칙에서 인권기구가 기존의 국가기구와 “보완적(complementary)”인 기능을 한다는 말¹³¹⁾은 기존의 국가기구가 “제1차”적 기능을 맡고 인권기구가 “제2차”적 혹은 부수적인 기능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구가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서로 합쳐서 완전한 국가의 기능을 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다르고 분리되어 있지만 보완한다(complement)는 뜻이기 때문이다¹³²⁾. 다시 말하면, 현대 국가들이 기존

130. 법무부 법안 2조 참조.

131. UN HANDBOOK, 91, 92, 94, 220 항 참조.

132. complement는 서로 다르고 독립되어 있는 두 가지가 합쳐서 완전한 기능을 한다는 주된 것에 추가하여 더 낫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omplement의 경우에는 어느 것이 다른 것에 대하여 부수적이고 제2차적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반면, supplement에는 하나가 제1차적이고 우선적인 것이며 다른 것은 제2차적이고 부수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인권기구가 다른 국가기구와 “보완적(complementary)”인 역할을 한다는 유엔 지침서의 내용을 다른 국가기구에 대하여 “부수적(supplementary)”인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왜곡하였다. 영어에서 두 가지가

의 국가기구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만을 전담하는 인권기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기존의 국가기구들이 제도적 한계 혹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¹³³⁾. 기존 국가기구들의 “인권보장기능의 허점을 감시·보충”¹³⁴⁾하는데 그치는 기구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한계를 보완(complement)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인 것이다¹³⁵⁾.

한편,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가운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complement”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용되는 것은 “크림과 딸기”, “직업과 가정”, “밥과 카레”, “법과 사랑” 같은 것이고, “supplement”의 관계에 있는 것은 책과 잡지의 본문과 부록, 정규직업에서 얻는 소득과 부수입 등이다. 이에 관하여는 Oxford Advanced Lerner's Dictionary, Oxford Univ. Press(1995); 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 Oxford(1978); 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Cambridge Univ. Press(1995); Sisa Elite English-Korean Dictionary, Si-sa-yong-o-sa; A New English Dictionary, Omunkak Publishing Company(1964) 등 참조. 한편 법무부는 “shortcomings”라는 단어도 왜곡하여 인용하고 있다. UN HANDBOOK, 51항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많은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정부의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인데, 이는 인권을 존중하는 데 생기는 결함(shortcomings)을 발견하여 개선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shortcomings”라는 단어는 인권기구가 정부정책의 “결함”을 찾아내서 바로잡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 인권기구 자체가 정부제도의 “틈새”를 채우는 부수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뜻은 전혀 아닌 것이다.

133. 파리 원칙을 제정한 파리 워크숍에서 기조발표를 한 프랑스 인도법 및 인권연구소 소장 Dominique Turpin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가, 특히 행정부가 인권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본성인 권력의 원리는 인권의 기초인 자유의 원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Paris Workshop Report, UN Doc. E/CN.4/1992/43, 27항.

134. 법무부 수정안, 12쪽 참조.

135. 인권기구가 국가 “인권보장기능의 허점을 감시·보충”한다는 말에는 국가가 해야 할 인권보장기능이 기존 국가기관에 완전하고 충분하게 부여되어 있는데, 단지 제대로 하지 못할 뿐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그러나 기존 국가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계몽시대의 국가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기구는 이런 본질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한쪽을 제1차적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를 제2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발상이다.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에 관하여 정부와 국회에 자문과 권고를 하여 제도를 개선하며 인권교육을 통해 국가기관과 국민의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현행법상 범죄나 불법행위로 파악하기 어려운 “회색영역”的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개선하는 등¹³⁶⁾ 매우 독특하고 독립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그 자체 다른 국가기능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이고 “제1차”적인 것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은 “법”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지만, 인권기구는 “인간의 고통”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기구의 주된 역할은 사람이 고통받는 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다¹³⁷⁾.

136. 이점이 인권기구와 검찰 등 수사기관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법무부 담당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가인권기구와 수사기관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논의가 혼란스러워진 측면이 있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보기로 군대안의 자살사고이다.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수사기관은 타살혐의가 있어야만 조사할 것이며, 범죄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임무는 끝난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는 사망자가 자살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군대에서 일반사회보다 더 많은 자살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다양하게 - 상급자의 구타와 같은 범죄외에 예컨대, 억압적인 군대의 분위기와 사병들에 대한 배려의 부족, 구타사고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미흡 등 -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할 것이지만, 인권기구의 본질적 관심사는 범죄자의 처벌이 아니라, 군대의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 제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인권기구와 수사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은 이처럼 서로 보완적(complementary)인 기능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수사기능은 일차적이고 중요하며 사병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게 하는 제도와 환경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기능은 이차적이고 부수적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참고로 군대내 사망사고(자살자)는 1995년 330명 (108명), 1996년 299명 (103명), 1997년 273명 (92명), 1998년 10월까지 196명 (75명)으로 평균 4일에 한 명꼴의 자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199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문화일보 1998.11.9.자 (천리안 기사색인) 참조.

137. 다시 예를 들면, 국가인권기구는 강간범죄피해자들의 신고율이 3%도 안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최일숙, ‘여성에 대한 폭력 -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헌법5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의 헌법현실 ('법과 사회' 이론 연구회 1998.9.25.) 자료집, 81-82쪽 참조.) 성폭력피해자들의 인권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제도와 환경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 조사를 통하여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각종 문제점, 예를 들면,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과 태도, 제도와 관행 등의 문

라.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과 국가인권기구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인권옹호”의 주무부서가 법무부이므로¹³⁸⁾, 인권기구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제청권을 비롯해서 일정하게 관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 귀결이 “인권법”안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업무에 “인권옹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무부가 인권기구의 구성과 업무에 개입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우선, 국가인권기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하여¹³⁹⁾, 기존의 국가기구가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기능, 즉 법률과 제도, 정책에 관한 자문기능(advisory function), 교육기능(educative function),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능(investigative function)을 맡는다¹⁴⁰⁾. 따라서 법무부가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인권옹호” 기능과 인권기구의 기능은 별개의 것이다.

인권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인권”的 개념은 법무부의 업무 분장에서 말하는 “인권”的 개념을 넘어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이는 특정한 수사관 개인의 범죄 또는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138. 법무부 쟁점검토, 9쪽. 정부조직법 제30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원래 구 정부조직법(1996.8.8. 법률 5153호) 제33조 1항이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정. 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라고 하고 있던 것을 김대중정부 출범시 정부조직법(1998.2.28. 법률 제5529호)을 개정할 때 “인권옹호”라는 대목을 삽입한 것이다. 법무부가 1996년부터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연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법무부가 국가인권기구를 자기의 산하단체로 만들기 위하여 미리 정부조직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139. 그러나 국가인권기구는 동시에 국가기관, 특히 입법부 및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Paris Workshop Report, UN Doc. E/CN.4/1992/43, 37항 참조.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인권기구에 강력한 지위와 독립성, 권한이 보장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140. UN HANDBOOK, 42항.

인권기구와 관련된 “인권”개념은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¹⁴¹⁾ 성격상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구 전체의 업무와 관련된 개념¹⁴²⁾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인권”이란 수사와 행정, 출입국 관리 등 법무부의 고유업무인 형사사법제도와 관련된 좁은 범위의 “인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의 업무인 “인권옹호”는 전체 국가기구의 역할에 모두 관련되어 법무부가 정부의 전반적인 활동 영역에 개입. 간섭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법무부가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 자처한다면, 자신이 감독하는 검찰과 행정업무를 통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수사기관과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주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법무부이다. 이미 부여되어 있는 “인권옹호”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¹⁴³⁾ 인권기구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력을 행

141. 법무부의 인권법안 3조 1호도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42. 예컨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권은 입법부와 직접 관련된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부에 관한 것이다. 인권교육기능은 교육부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청소년의 권리는 문화관광부, 사회복지나 보건, 정신질환자의 권리 등 사회적 권리는 보건복지부, 경제적 권리는 재정경제부, 환경권은 환경부, 재개발문제 등 주거권 문제는 건설교통부 등과 관련되어 있다. 고용에서 일어나는 차별행위의 시정은 노동부, 노동위원회 및 여성특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과 군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예방과 조사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및 국방부의 기능과 관련되며,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제대로 감찰하여 시정하지 못하는 문제는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 자체는 물론 검찰과 교정시설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스스로가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감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인권기구의 기능이 다른 정부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143.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영등포구치소, 용산경찰서, 그리고 성동구치소, 전주교도소에서만 적어도 네 사람의 수감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였다. 이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조차 사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그들의 사망원인을 단 한 건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수감시설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한 처리가 이런 정도인데, 다른 인권침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

사하거나 사실상 그 상위기관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인권옹호”에 진실한 관심이 있다면 스스로 감시받아야 할 존재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마. 영미법계 국가의 국가인권기구와 “법인”형태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를 “법인”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의 인권위도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엔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에서도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⁴⁾.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영국은 국가인권기구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다. 영국은 성차별의 근절, 남녀의 기회 균등향상,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of 1975)과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of 1975)의 검토와 향상을 위한 제안 등을 임무로 하여 1976년 의회가 설립한 기회균등위원회(Equal Opportu-

와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Amnesty International,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September 1998, AI INDEX: ASA 25/27/98; 인권하루소식 1998.12.5.자 참조. 1998년 초 동아일보가 최근 2년 동안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교도관으로부터 주먹이나 방망이로 구타당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65%, 다른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이 81%, 물고문을 당한 일이 있다는 대답이 33%였다. 이런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이 무려 42%이며 교도관이나 동료 재소자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대답은 더욱 높은 47%에 달하였다. 동아일보 1998년 3월 2일자 (천리안 기사색인). 이런 현실에 대하여 검찰과 법무부가 무슨 조치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이 없다.

144. 법무부 추진계획, 10쪽. 그러면서 “UN에서 모범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인권위원회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며 이들은 모두 법인(body corporate)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추진계획, 2쪽. 법무부, 정부안 주요내용, 5쪽은 “UN으로부터 모범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인권위는 모두 독립 법인 형태인 반면 국가기관 형태인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은 실패한 경우로 평가 받고 있음”이라고 하고 있다.

tunities Commission)와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of 1976)에 의하여 설립된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가 있을 뿐, 국가인권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¹⁴⁵⁾. 영국에서는 현재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¹⁴⁶⁾.

둘째, 영국의 기회균등위원회와 인종평등위원회, 호주의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뿐 아니라 스리랑카의 인권위원회도 “법인”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¹⁴⁷⁾.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 나라들의 인권기구가 “법인”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할 뿐, “법인격”을 가진 “국가

145. 물론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초기에는 모든 국가기구가 인권보장 기능을 한다는 이념적 근거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통털어 인권기구라고 포괄적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활동이 쌓여감에 따라 이런 포괄적인 개념정의는 점차 축소되어 현재와 같은 개념정의로 발전하였다. UN HANDBOOK, 36, 37항 참조. 또 이들 기구를 국가인권기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남녀평등 또는 인종평등과 같이 단일 주제를 다루는 기구와 포괄적인 국가인권기구는 구성과 조직원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46. Northern Ireland Bill은 1998년 7월 31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은 Amnesty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the Proposed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 1 October 1998 AI INDEX: EUR 45/18/98 참조. 한편 영국정부는 1997.10.24. 의회에 Human Rights Bill을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은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럽인권조약을 영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영국정부는 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RIGHTS BROUGHT HOME: THE HUMAN RIGHTS BILL, October 1997. <http://www.official-documents.co.uk/document/hoffice/rights/intro.htm>.

147.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스리랑카의 인권위원회가 “body corporate”으로(호주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제7조 (2)항; 뉴질랜드 Human Rights Act 1993, 제4조 (2) 항; 스리랑카 Human Rights Commission Act, No.21 (1996), 제2조 (2)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위원회가 “juristic person”으로(Human Rights Commission Act, No. 54 of 1994, 제17조 제1항) 규정되어 있고, 이를 용어는 우리말로 “법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인권위원회가 성공적인 모델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식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인권위원회를 모범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유엔의 자료는 없다.

기관”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미법계통의 법체제를 가진 이들 나라들의 “body corporate”이나 “juristic person”은 우리 법체제의 “법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¹⁴⁸⁾.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위원회는 점정헌법 제115조 내지 제118조, 1997년 최종헌법 제184조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다¹⁴⁹⁾. 호주와 뉴질랜드의 법률은 인권위원회의 직원들을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⁵⁰⁾. 이렇게 본다면, 이들 나라의 인권위원회들이 “body corporate” 또는 “juristic person”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식의 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이지만,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법률 행위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의무능력을 가진 기관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들 기관이 한국법에서 말하는 법인이라면,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할 이유가 없는 반면, 당연히 등기절차, 정관,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⁵¹⁾.

148. 호주와 뉴질랜드, 스리랑카의 법조항은 모두 인권위원회가 영구히 존속하는 “body corporate”라고 하면서 “문장(紋章)을 가지고 동산과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들 법률은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처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거나 정관에 의하여 업무와 활동내용이 규정된다는 내용은 전혀 두지 않고 있다.

149.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위원회법 제17조는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표제아래 (1)항에서 위원회를 “juristic person”으로 규정한 다음 (2)항에서 국가책임법(State Liability Act)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준용되고, 위원회와 위원, 그 직원 등은 위원회의 보고, 조사결과, 견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역시 “법인”에 필요한 규정은 전혀 두지 않고 있다. 한국의 법체계에서 헌법기관을 “법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150. 호주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제43조 (1)항; 뉴질랜드 Human Rights Act, 제137조. 그런데도 법무부는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의 직원들이 민간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15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정관을 만들거나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법률에 따라 성립하고 일정한 범위의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에서 말하는 공법인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말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중앙행정기관의

셋째, 유엔의 지침서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영미법계 국가들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국가기관에서 독립하여 법률행위능력과 독립된 정책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일 뿐¹⁵²⁾ “법인” 형태로 국가인권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¹⁵³⁾.

지도. 감독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지방자치법 제155조 내지 제159조 참조) 그 독립성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52. 이 지침서의 정확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근거법률은 그 법적인 독립성, 특히 정부로부터 독립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국가기구가 독립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성질의 분리되어 있고 뚜렷한 법인격을 허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Ideally, a national institution will be granted separate and distinct legal personality of a nature which will permit it to exercise independent decision-making power.) 독립된 법적 지위(independent legal status)는 국가(인권)기구가 어떠한 정부부처나 공적, 사적 실체로부터도 개입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기관이 국회나 국가원수에게 직접 책임지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도 있다. 법적, 실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밖의 제도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법적 및 운영상의 자율을 통한 독립(Independence through legal and operational autonomy)”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이 부분의 중점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에 놓여 있고, “법인” 형태의 조직구조에 있지는 않은 것이 문맥상 분명하다. UN HANDBOOK, 70항 참조.

153. 법무부는 또 몇몇 영미법계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 추진계획, 12쪽. 그러나 이들 나라들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인권침해상황과 법무부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법무부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무부와 한국의 법무부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업무를 장리”하여 검찰을 지휘, 감독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도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또 모든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에 복종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검찰청법 제7조, 제8조). 이렇게 한국의 경우 법무부와 검찰은 사실상 한 몸이라고 보아야 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대전지검이 자민련 대전지부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법무부장관이 직접 전화를 건 다음 그 수사가 중지된 사건을 보면, 한국의 법무부와 검찰관계가 그나마 법률의 규정 조차 지키지 않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에 법무부는 법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인 반면 검찰은 법률을 집행하는 부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Minister for Justice가 인권위원을 추천하는데 한국식의 법무부장관 역할을 수행하는 Attorney-General이 따로 있다. 그런

넷째,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의 경우를 들면서 국가기관 형식의 인권기구는 실패한 모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인권기구가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한 성공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예는 얼마든지 더 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인권기구들이 국가기관이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데도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이 인권기구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¹⁵⁴⁾. 반면 미국과 캐나다, 남

반면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것은 Director of the Public Prosecution’s Office로 분리되어 있고, Attorney-General은 검찰총장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침(guideline)을 문서로 제시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침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해야 하며 Attorney-General이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침은 관보에 실어 공개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Act 1990, 제20조; <http://law.gov.au/aghome/aghome.htm> 참조. 이처럼 호주의 Minister for Justice와 한국의 법무부장관은 그 기능과 권한의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호주의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Brian Burdekin씨는 1998년 9월 19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연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무부와 호주의 법무부를 비교하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하여 “사과를 사과와 비교하지 않고 오렌지와 비교하는 것”이라는 말로 답변하였다.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권고한 검사들의 견의가 있기도 했지만, 한국의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호주의 법무부나 검찰과 같은 정도의 제도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4. 법무부, 정부안 주요내용, 4쪽은 국가기관형태로 하면 “집권층의 권력형 인권침해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체제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essential conditions)이라는 점은 파리원칙을 제정한 파리워크숍에서도 거듭 강조된 바 있다. Paris Workshop Report, UN Doc, E/CN.4/1992/43, 161, 164항 참조. 한편, 법무부 추진계획, 8쪽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위는 국가기구로 설립하였으나 정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역할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이 UN의 평가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UN에서 인도네시아의 인권위가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내린 일은 없다. 물론 인도네시아의 인권기구는 성공적이지 않다. 그러나 국가기구로서 관료화되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성이 없는, 대통령에 예속된 기구로 설치되었고, 인도네시아의 정부와 헌법체제가 아직도 독재정권의 틀을 못벗어나고 있기 때문이지,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주장은 듣기

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기구들, 그리고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인권에 관한 음부즈만들¹⁵⁵⁾은 홀륭하게 기능하는 국가기관들이다.

바. 국가기구의 관료화와 “인권전문가”的 참여문제

(1) 법무부의 문제제기¹⁵⁶⁾

법무부는 인권기구를 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거로 국가기관이 되면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되고 관료화되어¹⁵⁷⁾ “같은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적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¹⁵⁸⁾ “정부조직의 일부가 되

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법인”형태로 인권위를 만들었다면 성공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점은 지난 군사정권 시절 한국의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판사들 스스로 “지난 날 우리 사법부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 판사들은 판결로써 말해야 했을 때 침묵하기도 하였고 판결로써 말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판결이라는 방패뒤에 숨어 진실에 등돌리기도 하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1993년 6월 30일 서울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의 ‘사법부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人權報告書(1993년도 제8집), 282-283쪽에서 인용.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상황에 관하여는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98, 196-199, 287-290, 354-356쪽 참조.

155. 일반적으로 음부즈만은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인권기구와 구별된다. UN HANDBOOK, 43항. 그러나 스웨덴의 의회음부즈만(Parliamentary Ombudsmen)과 인종차별금지음부즈만(Ombudsmen for Ethnic Discrimination), 기회균등음부즈만(Ombudsmen for Equal Opportunity)은 인권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기구”的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Brian Burdekin, 앞의 글(UN Doc. A/CONF.157/PC/92/Add.3), 4, 20쪽 참조. 그밖에 스웨덴의 음부즈만에 관한 것은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法學論集 근간) 참조.

156. 인권기구를 국가기관아닌 민간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가 내세운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하여는 차지훈, ‘법무부쟁점검토에 대한 검토의견’, 국민회의 보고서, 117-127쪽 참조.

157. 법무부 수정안, 13쪽은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대통령 산하기구가 되고 관료화”된다고 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 시안과 민간공추위의 시안은 다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에 소속하지 않은 완전히 독립한 국가기구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의 주장은 전제사실부터 잘못된 것이다.

158. 법무부 추진계획, 8쪽.

어 대외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관료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입장에서 국가기관을 비판하기가 곤란”하다는 주장¹⁵⁹⁾도 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전반이 적용되어 인권지도자의 인권위 참여가 제약되므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인권위의 구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¹⁶⁰⁾ 주장하였다.

(2) 관료화의 문제

공무원의 관료화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그것을 이유로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고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에 속하는 인권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혹은 정부의 산하에 있는 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무원인 검찰과 법원이 “같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를 제대로 수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능을 폐지하거나 민영화하여 법인으로 만들자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인권기구가 국가기구로 설치되어 공무원이 되면 “관료화”되고 법인으로 만들면 관료화되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법인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가 결정한 조직과 예산에 따라,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들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이다.

(3) 자유로운 정부비판과 독립성의 문제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가는, 인권기구가 제도적으로 어떤 지위와 기능, 권한을 가지는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하는가, 그리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159. 법무부 쟁점검토, 4쪽.

160. 법무부 쟁점검토, 5쪽.

법무부가 예로 들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소속된 기관으로서¹⁶¹⁾ 성격상 자문기관¹⁶²⁾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법률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¹⁶³⁾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기관을 가지고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¹⁶⁴⁾. 문제는 앞으로 설치되는 인권기구를 “자유로운 입장에서 국가기관을 비판”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지, 독립성이 약하고 권한도 제약되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예를 들어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4) 민간전문가의 인권기구 참여문제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므로 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법률에 의하여 임용되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공무원이므로¹⁶⁵⁾ 법인이 되면 민간전문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되면 쉽게 참여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이든 국가기관이든, 그 직원들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자질과 능력, 전문성과 헌신성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인권기구에 참여하

16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162. 일반적으로 행정부에 속한 위원회 형태의 기구는 자문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 그리고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가 있다. 朴東緒, 韓國行政論, 法文社 (1987), 259-263쪽 참조.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위원회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조사권한도 아무런 강제력이 없으며 그 결정도 구속력이 없고 권고와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제36조 참조.

16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64. 법무부 실무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을 공표할 권리가 있는데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료화되어 이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권성동검사의 주장, 기독교(CBS)방송 1998.11.17.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대담.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의 약한 위상과 독립성, 권한의 문제를 지적하는 편이 공정할 것이다.

165. 법무부 법안 73, 74조는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에 대해 형별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독립성도 약하고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법인에 어떤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려고 할지 의문스럽다.

인권기구와 민간단체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민간단체는 일반 국민, 특히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인권기구의 존재와 기능, 역할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준다. 민간단체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출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인권침해 또는 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권기구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동반자이다. 그뿐 아니라 인권문화를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기구와 민간단체는 일정한 범위에서 특정한 사업과 행사를 함께 할 수도 있다¹⁶⁶⁾. 그러나 그것도 인권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와 독립성,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인권기구와 민간단체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단체는 인권기구가 제대로 역할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기구와 민간단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서는 안되며 인권기구가 생긴다고 해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줄어들지도 않는다¹⁶⁷⁾. 인권기구에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기구와 민간단체는 서로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보완적(complementary)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것이다. 인권기구와 민간단체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¹⁶⁸⁾.

166. UN HANDBOOK, 108-111항 참조.

167.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으로 민간단체의 영역이 침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파리 위크숍에서 강조되었다. Paris Workshop Report, UN Doc. E/CN.4/1992/43, 132항.

168. 법무부의 민간 인권단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내용으로 된, 법무부 시안 제4장에 있던 일련의 조항들은 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인권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고 관변단체로 만들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법무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자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법무부 보도자료, 23쪽) 이는 인권옹호자선언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더우 충격적이었다. 1998년 3월 4일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인권옹호자선언은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제반 권리, 특히 평화적

사. 다른 기관과 기능중복 문제

법무부는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및 노동위원회를 거론하면서 인권기구를 국가기관으로 만들 경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국가기구의 업무와 중복되어 기존 국가기구의 위축과 업무 혼선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¹⁶⁹⁾ 법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⁰⁾.

가능하면 인권기구와 다른 국가기관 사이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기구, 특히 권리구제기능을 하는 기관들과 인권기구의 역할은 사실상 중복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중복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서로 충돌하지 않고 보완(complement)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⁷¹⁾.

인권기구와 다른 권리구제기관 사이에 중복이 생기는 부분은 개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영역이다. 인권기구는 기존의 사법부에 의한 재판절차에 비하여 인권침해의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쉽고, 융통성 있는 절차에 따

집회와 결사의 권리, 정보청구권과 표현의 자유, 인권침해에 평화적 수단으로 저항하고 반대할 권리, 정부에 대한 접근 및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있을 뿐, 법무부가 말하는 바와 같은 “국가의 보호 및 육성”을 권고하는 조항은 전혀 담지 않고 있었다 인권하루소식 1998년 4월 8일자, 2쪽; APHR-FT NEWS (The Newsletter of the Asia Pacific Human Rights NGOs Facilitating Team) Vol. 1, No. 2 (March-April 1998), pp.5-6; Human Rights Tribune Vol.5, Nos. 1-2 (April 1998), pp.13-15참조.

169. 법무부 쟁점검토, 6쪽.

170. 특히 법무부 추진계획, 9쪽은 국가인권기구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유사기구와 합쳐 통합적 국가기구로 설립할 경우, “군. 검찰. 안기부. 경찰. 감사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을 사실상 감독하는 거대 국가기구화로 ‘정부위의 정부’가 되어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기능 저해”를 주장하며 “제2의 중앙정보부화”가 염려된다고 하고 있다. 이 주장은 그 자체 논리의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데, 인권기구를 행정부에 속한 다른 기관들과 통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설령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위의 정부” 또는 “제2의 중앙정보부”가 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은 인권기구를 독립한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데 대한 다른 정부기관의 두려움과 반대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억지로 가져다 붙인 주장이며 법무부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171. UN HANDBOOK, 91항.

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분야에 전문화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하나로 볼 수 있다¹⁷²⁾. 법원의 재판절차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분쟁해결기능이 법원에만 집중되어 업무부담이 과중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다른 기관들과 사이에 과도한 업무중복으로 혼란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을 들어 인권기구가 제공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인권기구와 다른 국가기관이 필요한 경우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제도(inter-agency referral)를 마련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¹⁷³⁾. 오히려 인권기구는, 감사원¹⁷⁴⁾과 수사기관¹⁷⁵⁾, 여성특별위원회¹⁷⁶⁾, 고

172. UN HANDBOOK, 92항.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에 얹매이고 법원의 사건부담도 과중하여 권리구제절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착안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전제아래, 덜 엄격하고 신속하며 값싼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나 민사조정제도, 그리고 노동위원회 등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행정위원회 제도가 모두 ADR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관하여 일반적인 내용은 鄭甲柱, ‘美國法院에 있어서 ADR의 制度化’, 裁判資料 第58輯 (外國司法研修論集 9), 法院行政處 (1992), 211-252쪽 참조.

173. UN HANDBOOK, 94항. 이것은 모든 나라의 인권기구에 공통된 일이며 법무부 시안도 “위원회는 진정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하여(47조 1항) 이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74.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진 감사원의 기능과 이론상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회계감사를 그 본래 업무영역으로 할 뿐 아니라, 권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사실상 직무감찰권을 행사한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감사원과 국가인권기구 사이에 기능의 중복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오히려 권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문제점을 국가인권기구가 지적하고 권한행사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기존의 국가기구가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는 기능을 한다는 개념정의에 비추어도 (UN HANDBOOK, 91항) 실제로 감사원이 하지 않고 있는 기능을 들어 중복과 충돌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충처리위원회¹⁷⁷⁾ 등 다른 국가기관들이 본래 역할을 더 잘하게 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능의 중복이나 충돌은 결국 설치될 인권기구가 어떤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고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지, 국가기구이면 자동적으로 중

175. 법무부는 “인권침해, 즉 기본권침해행위는 대부분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 경찰, 안기부와도 기능중복과 업무혼선 초래”, “이 경우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진 검찰, 경찰, 안기부를 능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축될 소지가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쟁점검토, 6쪽. 그러나 이는 인권의 개념 및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오해한 주장이다. “인권침해”는 예컨대 법무부 법안이 정한 “인권침해행위”와 같이 실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성희롱과 같이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범죄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권침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가 주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는 범죄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른바 “회색영역”的 인권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의 인권침해에는 수사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서로 간에 업무의 중복과 충돌이 일어날 여지가 별로 없다. 법무부의 주장은 인권기구의 역할을 검찰이 하려고 하지 않는 몇몇 범죄행위를 대신 조사해 주는 것으로 한정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176. 정작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의하면 남녀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기능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과 완전히 중복되어 차가당착을 일으키고 있다.

177. 인권기구는 행정의 영역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으며 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fairness and leg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의 감시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옴부즈만과 다르다. UN HANDBOOK, 43, 44항 참조. 인권기구를 국가기구로 설치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접 인권문제를 관심사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즉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 상담”하고 “조사, 처리”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으로 원래 정부 각부처에 설치되어 있던 “민원실”을 합쳐서 만든 것이다. 더구나 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위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법무부 시안에서 “국민인권위원회”的 조사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인권침해행위의 전부, 그리고 국가기관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의 대부분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조사권한이 없는데, 인권기구를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 모순이다.

복과 충돌이 생기고 법인이면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아. 공무원 충원과 예산 부담문제

법무부는 “정부기구 축소와 공무원 감원을 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공무원 충원과 예산부담 문제를 고려”하여¹⁷⁸⁾ 국가기관 대신 법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이야 말로 국가의 기틀과 관련된 거시적 정책의 문제를 말단 행정관료 차원의 미시적 문제로 호도하여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할 만 하다.

인권기구를 만들 경우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경제위기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담의 정도는 국가기구로 하건, 법인으로 하건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어떤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국가기구로 하면 무조건 커지고 법인으로 하면 무조건 적어진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인권기구는, 현재 어려운 국가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사회적 위기를 불러오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¹⁷⁹⁾ 만들어야 하는 기관이다. 나아가 국가인권기구가 필요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아 제대로 활동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인권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178. 법무부 수정안, 13쪽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총정원령’(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공무원 정원은 동결되고 매 3년마다 감축하여야 하는데,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경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움”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총정원령’(안)을 들고 있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고, 기준 행정기관의 틀에서 독립해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그 틀속에서 이해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또 ‘공무원총정원’은 줄이더라도 각 부서나 기능에 따라 필요한 사람은 충원해야 하는 것이지, 전체 정원을 줄인다고 하여도 민주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직원 조차 충원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가 궁색하다. 어차피 현정부의 정책은 공무원뿐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과 출연기관의 직원도 감축하는 것이므로 법무부식의 논리대로라면 ‘법인’으로 만드는 국가인권기구의 직원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179. 이점에 관하여는 이영조,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계간 사상 1998 여름호, 173-176쪽 참조.

긴장의 완화와 비용의 절감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맷는 말

지금까지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나타난 내용과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현정부가 내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전혀 걸맞지 않게, 시민사회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법무부의 밀실에서 태어난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이름과 실질이 들어맞지 않고 법이 내세운 목적과 내용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며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안에는 “인권법”이라는 이름에 값할 만한, 인권의 실체적 개념을 풍부하게 하거나 기준을 높이는 조항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개념을 오히려 축소한다고 까지는 굳이 단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활동의 범위와 절차, 방법을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한 조항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아름다운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실질은 법무부의 업무를 보조하고 법무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소도구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법안에 나타난 “국민인권위원회”의 실질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 구제하고 인권의식을 고양”한다는 법의 목적 사이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법을 거부한다”는¹⁸⁰⁾ 인권운동가들의 성명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다.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정책의 개혁, 인권교육, 현재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벌어질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그리고 현

180.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성명서, ‘우리는 정부의 인권법안을 거부한다’ (1999.4.7.).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 “국민인권위원회”가 떠안을 것이 확실한 과거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등, 민주주의 국가의 자기목적에 해당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국민인권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인권위원회”를 과연 “파리원칙”에서 말하는 “국가인권 기구”라고 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도데체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기 어렵다. 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는 권력적 이해관계를 모든 가치에 앞세우는, “민주적” 전망의 협소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초점을 좀해서 보면 “법인”的이 갖는 한계¹⁸¹⁾, 그리고 위원회를 법무부의 영향력아래 두려는 관료적 이해관계에 기인한다. 이런 모습으로 국가인권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시민사회와, 특히 인권피해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는 국제 사회에서 자랑할 거리가 되고 법무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자신이 할 일을 떠넘기며 평계거리를 삼을 수 있는 기구가 될지는 모르겠다. “파리원칙”을 제정한 회의는 이미 이런 인권기구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알리바이 인권기구(alibi national institutions)”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이다¹⁸²⁾.

이 법안이 국회를 통하여 법안에 있는 모양대로 “국민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그것이 과연 인권활동가들의 주장처럼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기구”가 될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기구”가 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181. 민간 공추위는 인권기구를 국가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국민회의도 그런 방향으로 자체 법안을 작성한 바 있다. 그것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인권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지위와 독립성,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는 반면 “법인”으로 할 경우 그 가능성성이 처음부터 봉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애초의 시안에 비하여 많은 수정을 거친 현재의 법무부 법안이 보여주는 모습, 즉 “알리바이 인권기구”的 수준밖에 만들어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증명된다.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인권기구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는 조용환, 앞의 글 참조.

182. “알리바이 인권기구(alibi national institutions)”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호도하는 데 동원되는 “국가인권기구”를 말한다. “알리바이 인권기구”的 개념은 Paris Workshop Report, UN Doc. E.CN.4/1994 /45, 23 December 1993, 25항 참조.

아마도 그 사이의 어딘가를 끝없이 표류하며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울 것이고, 그런 가운데, 김대중정부가 내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좌표의 한 축이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人 權 法 案

議案 番號	
----------	--

提出年月日：1999. 4.

提 出 者：政 府

提案理由

우리나라는 그동안 秩序維持에 중점을 둔 나머지 人權保障에 疏忽함이 없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과거에 國家權力에 의한 人權侵害事件을 經驗하였음.

이제 秩序와 人權이 함께 존중되는 先進民主社會를 指向함에 있어서 人權에 관한 基本法이 制定될 時期에 이르렀고, 특히 國家權力에 의한 人權侵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民間監視가 切實하다고 할 것임.

또한 人權侵害行爲중 差別行爲에 대하여는 男女雇傭平等法 등 個別法律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금지되고 있을 뿐이므로 差別行爲에 대한 개념규정과 差別行爲의 禁止·救濟를 새로이 規定할 필요가 있음.

이法案은 이러한 人權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國家權力에 의한 人權侵害의 監視·救濟, 그리고 差別行爲에 대한

禁止・救濟를 규정하고, 國家의 人權保障機能에 虛點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監視・救濟・補完할 國民人權委員會의 設置를 法制化하기 위한 것임.

이 法의 制定으로 國內的으로 人權狀況이 劃期的으로 개선되어 人間의 尊嚴과 價值가 존중되는 先進民主社會가 具現되고, 國際的으로는 人權先進國家로서의 國家의 이미지가 확고히 構築되기를 기대함.

主要骨子

가. 이 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值를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人權侵害를 防止・救濟하고 人權意識을 高揚함을 目的으로 함(案 第1條).

나. 이 法은 ①人權에 관한 教育과 弘報 ②人權의 摊護와伸張을 위한 制度 등의 개선 ③人權侵害(差別行爲 포함)에 대한 신속한 調查와 救濟 등의 實踐을 基本方針으로 정하고, 이 基本方針의 수행에 관한 責任을 國家에, 이를 監視・補完하는 責任을 國民人權委員會에 賦課함(案 第2條).

다.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과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外國人에게 적용함(案 第4條).

라. 法務部・外交通商部・教育部・保健福祉部・勞動部・女性性特別委員會 등 中央行政機關 등이 人權의擁護와伸張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役割을 規定함(案 第6條 및 第7條).

마. 性別, 宗教, 年齡, 障碍, 社會的 身分, 人種, 皮膚色, 出身國家, 出身民族, 出身地域, 出身學校, 容貌 등 身體的 조건, 婚姻與否, 家族의 狀況, 政治的 見解에 기하여 雇傭과 財貨・用役・交通手段 및 商業施設 등의 供給 또는 이용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特定人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差別行爲를 금지하되, 「人種侮辱」과 「性戲弄」을 差別行爲의 特수한 類型으로 規定함(案 第8條 내지 第10條).

바. 國民人權委員會의 設立・業務・組織 및 운영과 國家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함.

(1) 人權의擁護와伸張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國民人權委員會(이하 “委員會”라고 함)를 法人으로 設立함(案 第11條).

- (2) 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하도록 함(案 第12條).
- (3) 委員會는 ①人權에 관한 教育과 弘報 ②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研究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③搜查機關 등의 人權侵害行爲와 差別行爲 천반에 대한 調查와 救濟 ④拘禁·保護施設에 대한 視察과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⑤人權狀況에 관한 實態조사 ⑥人權侵害의 類型·判斷基準과 그豫防措置 등에 관한 指針의 제시 및 권고 ⑦人權의擁護와伸張을 위하여活動하는 團體 및 개인과의 協力 ⑧人權關聯 國際機構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그 業務로 함(案 第16條).
- (4) 委員會는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기타 公·私團體 등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며, 委員會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 등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도록 함(案 第18條 및 第19條第2項).

- (5) 委員會는 매년 前年度 活動狀況에 관한 年例報告書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大統領과 國會에 보고하고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며, 이를 國民에게 公表하도록 함(案 第20條).
- (6) 委員會의 委員은 國會議長과 大法院長이 추천하는 각 3人을 포함하여 9人을 大統領이 임명하고, 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大統領이任命하며, 委員長을 포함한 4人の委員은 常任으로 하고, 그 任期는 3年으로 하며, 委員中 3人 이상은 女性으로任命하도록 함(案 第21條 및 第24條).
- (7) 委員會의 業務중 일부를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3人の委員으로 구성하는 小委員會에서 처리하도록 함(案 第22條).
- (8) 事務處는 事務總長 및 職員으로 구성하며, 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任命하고, 職員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任免하도록 함(案 第29條).
- (9) 委員會의 요청이 있을 경우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등은 公務員을 委員會에 派遣할 수 있도록 하고, 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은 소속 國家機關 등으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하도록 함(案 第37條).

(10) 委員會의 豫算은 政府出捐金과 民間寄附金으로 충당하도록 함(案 第38條第1項 및 第39條).

사. 委員會는 陳情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人權侵害行爲를 조사할 수 있음(案 第40條).

(1) 搜查機關 등의 職員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의 職員이 그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아래의 행위

(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행위

(나)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押收 또는 搜索하는 행위

(다)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郵便物의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對話秘密을 침해하는 행위

(라)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他人의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摄影하여 公開하거나 그 秘密을 누설하는 행위

(마)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拘禁 · 保護施設의 收容者나被保護者를 懲戒 또는 懲罰하는 행위

(바) 사람에 대하여 暴行 · 脅迫 · 拷問 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 사람을 公然히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는 행위

(아)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權利行使를 방해하는 행위

(2) 搜查機關 등의 職員과 共犯關係에 있는 者가 그 職員의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위 (1)의 (가) 내지 (아)에 해당하는 행위

(3) 搜查機關 등의 職員이 아닌 政府機關의 公務員이 그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위 (1)의 (바)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와 共犯關係에 있는 者가 그 公務員의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위 (1)의 (바)에 해당하는 행위(다만, 이 경우의調査에는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議決을 요함)

(4) 差別行爲 전반(性戲弄과 人種侮辱 포함)

아. 委員會의 調査方法으로 陳述書 제출 要求權, 出席要求權, 陳述聽取權, 鑑定依賴權, 關係資料 등 제출 要求權, 제출된 資料·物件의 領置權, 實地調查權 등을 規定함(案 第47條).

자. 調査結果에 따른 處理는 다음과 같이 함(案 第44條, 第51條 내지 第59條).

(1) 緊急救濟措置 勸告 — 人權侵害行爲가 계속중이고 회복

곤란한 被害가 예상되는 경우 最終決定 이전에 해당 人
權侵害行爲의 中止 등 적절한 救濟措置를 勸告

(2) 合意勸告 — 人權侵害行爲가 있었다는 蓋然性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간의 合意를 勸告

(3) 調停 — 原狀回復 · 損害賠償 등에 관한 調停이 성립한
경우 裁判上和解의 효력을 인정하고, 필요시 委員會의
職權으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가능

(4) 法律救助 — 被害者를 위하여 大韓法律救助公團 등에
法律救助를 요청

(5) 救濟措置 勸告 또는 意見의 表明 — 人權侵害行爲가 인
정되는 경우 被陳情人 등에 대하여 해당행위의 中止, 原
狀回復 · 損害賠償 등 필요한 措置를 勸告하거나 委員會
의 意見을 표명

(6) 告發 또는 搜查依賴 — 犯罪行爲에 해당하거나 그 개연
성이 인정되는 경우 檢察總長 등에게 告發 또는 搜查依
賴

(7) 관계 法令 · 制度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
조사과정에서 인권관련 法令 · 制度 등의 改善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國家機關의 長에게 그에 관한 勸
告나 意見을 표명

(8) 關係機關에의 移送 — 다른 國家機關에서 처리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기관에 移送

(9) 陳情의 却下 — 陳情의 原因事實이 발생한 날부터 1年
이 경과한 경우(다만, 1年이 경과한 경우라도 委員會가
調査하기로 議決한 경우에는 調査할 수 있음), 다른 法
律에 의하여 國家機關에서 權利救濟節次가 진행중인 경
우 등

(10) 陳情의 棄却 — 조사결과 陳情이 事實이 아니거나 별
도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차. 委員會는 인권관련 法令 · 制度 등의 改善, 國際人權條約의
가입 및 이행, 拘禁 · 保護施設의 개선, 人權侵害行爲의 예방
조치, 緊急救濟措置, 조사결과에 따른 救濟措置 등의 勸告
와 委員會로부터 勸告 등을 받은 관계 國家機關의 措置結
果 등 通報內容을 公表할 수 있음(案 第63條).

카. 委員會로부터 勸告 ·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國家機關 · 團體
의 長 등은 그 勸告 ·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날부터 30

日이내에 그措置結果나措置計劃을委員會에 통보하여야하며,國家機關등의長이委員會의권고를수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理由를설명하도록함(案第64條).

타. 이法의實效性을확보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罰則과過怠料를規定함.

(1)人權委員및職員의업무수행방해,委員會에대한허위 사실의陳情,委員會에대한陳情書작성및제출방해,人權委員등資格詐稱,秘密漏泄,賂物收受,職權濫用,政治關與등에 대하여는刑事處罰하도록함(案第68條내지第74條).

(2)委員會의拘禁·保護施設에대한視察을정당한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경우,委員會의출석요구또는資料提出등의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불응한경우,委員會에 허위의資料등을제출한경우,委員會의實地調查를거부·방해·기피한경우에 대하여는1千萬원이하의過怠料에處하도록함(案第75條).

파. 이法은公布후6月이경과한날부터施行되며,設立委員委囑등설립준비에관한사항은公布한날부터施行하도록함(案附則第1條).

法律 第 號

人權法案

第1章 總則

第1條(目的)이法은모든사람에게人間으로서의尊嚴과價值를보장하기위하여政治·經濟·社會·문화의모든領域에있어서人權侵害을방지·救濟하고人權意識을高揚함을目的으로한다.

第2條(基本方針)①이法은第1條의目的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各號의사항을實踐함을基本方針으로하며,國家는이基本方針을수행하여야한다.

- 人權意識의鼓吹를위한教育및弘報
 - 人權에관한法令·制度·政策및慣行의개선
 - 人權侵害에대한신속한調查와救濟
 - 기타人權의擁護와伸張에필요한措置
- ②國民人權委員會는第1項의規定에의한基本方針의수행에관하여國家機關의活動을監視·補完한다.

第3條(定義)이法에서사용하는用語의定義는다음과같다.

- “人權”이라함은憲法및法律에서보장하거나大韓民國이加入·批准한國際人權條約및國際慣習法에서인정하는人間으로서의자유와權利를말한다.
- “矯正機關등”이라함은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少年院및少年分類審查院을말한다.

3. “搜查機關 등의 職員”이라 함은 檢察·警察·國家情報院·矯正機關 등·保護觀察所 및 出入國管理事務所(外國人保護所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者와 그職務範圍에 關한法律에서 規定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하는 者, 軍檢察·憲兵·機務部隊에 소속된 軍人 및 軍務員을 말한다.

4. “多數人保護施設”이라 함은 多數人을 보호·收容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5. “拘禁·保護施設”이라 함은 警察署 留置場·矯正機關 등·外國人保護所·軍矯導所(軍拘置所 및 憲兵隊의 營倉을 포함한다) 및 多數人保護施設을 말한다.

第4條(적용범위)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과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外國人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2章 國家機關의 人權保障 義務와 役割

第5條(國家機關의 義務) 모든 國家機關은 法令의 制定과 改正 및 政策의 수립에 있어서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하며 그 執行過程에서 개인의 人權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法務部의 役割) ①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人權擁護에 관한 政府의 綜合計劃 수립 및 施行
 2. 人權擁護에 관한 각 部處間의 協力
 3. 國民人權委員會에 대한 지원
 4.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活動하는 團體 및 개인과의 協力
- ②法務部長官은 매년 6月 30日까지 國民人權委員會의 권고·告發 및

搜查依賴와 이에 대한 國家機關 등의 措置結果 등을 綜合하여 人權狀況을 分析하고 그 改善對策을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7條(關係中央行政機關 등의 役割) ①外交通商部長官은 國際人權條約에의 加入,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活動에의 參加, 在外國民의 人權侵害의豫防과 救濟를 통하여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教育部長官은 初·中等教育法에 의한 各級學校의 教育課程에 人權에 관한 教育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保健福祉部長官은 女性·障礙人·老人·兒童 등 社會的 弱者の 福祉增進을 통한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多數人保護施設에서 人權侵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④勞動部長官은 雇傭의 촉진과 勤勞條件의 향상을 통하여 勤勞者の 人權을 伸張하도록 하여야 하며, 雇傭分野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⑤女性特別委員會 委員長은 女性에 대한 차별행위를豫防하고 개선하는 活動을 통하여 女性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기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業務에 관하여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을 수행하기 위한 方案을 강구하고 이를 實行하여야 한다.

第3章 차별행위의 금지

第8條(차별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性別(出產 또는 嫣娠을 포함한다), 宗教, 年齡, 障碍, 社會的 身分, 人種, 皮膚色, 出身國家, 出身民族, 出身地域, 出身學校, 容貌 등 身體的 조건, 婚姻與否,

家族의 狀況, 政治的 見解에 기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集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優待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優待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雇傭(모집, 採用, 教育, 配置, 升進, 賃金 및 賃金외의 金品 지급, 資金의 融資, 停年, 退職, 解雇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行위
2.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行위
3.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行위

第9條(人種侮辱)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이용 또는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이용에 있어서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敵對感 또는 憎惡心을 表明하거나 輕蔑 또는 嘲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侮辱感을 느끼게 하는 行위는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에 基한 차별행위로 본다.

第10條(性戲弄) 男女差別禁止 및 救濟에 관한法律 第2條第2號에 規定한 性戲弄은 性別에 基한 차별행위로 본다.

第4章 國民人權委員會

第1節 設立 및 業務

第11條(設立) ① 차별행위를 포함한 人權侵害를 調查·救濟하고 기타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관한 業務를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國民人權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 委員會는 法人으로 한다.

第12條(獨立性) ① 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 한다.

② 委員會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3條(事務所) ① 委員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第14條(定款) ① 委員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4.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5. 財產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小委員會에 관한 사항
7. 事務處에 관한 사항
8. 人權委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变경에 관한 사항
10. 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委員會는 定款을 变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在籍 人權委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하여야 한다.

第15條(登記) ①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6條(業務) 委員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人權에 관한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立法過程중에 있는 法令案을 포함한다) · 制度 · 政策 · 慣行의 研究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3. 搜查機關 등의 人權侵害行爲에 대한 調查와 救濟
4. 차별 행위에 대한 調查와 救濟
5. 國際人權條約에 따른 政府報告書 작성의 지원
6. 國際人權條約에의 加入 및 그 條約의 이행에 관한 研究와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7. 國家機關이 요청하는 人權에 관한 研究와 諮問
8. 拘禁 · 保護施設에 대한 視察과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9. 人權狀況에 관한 實態調查
10. 人權侵害의 類型 · 判斷基準 및 그豫防措置 등에 관한 指針의 제시 및 권고
11. 人權의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活動하는 團體 및 개인과의 協力
12.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 및 外國의 人權機構와의 交流 · 協力
13. 第1號 내지 第12號에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業務

第17條(拘禁 · 保護施設의 視察) ①委員會는 人權實態를 파악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人權委員으로 하여금 第16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의 職員 및 專門家를 同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面談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内보여야 한다.

⑤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禁 · 保護施設을 視察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表明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施設의 長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18條(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調要請) ①委員會는 第16條에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 · 私團體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第19條(권고 등의 相對方 및 권고에 대한 尊重義務) ①第16條第2號 · 第6號 · 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은 관계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 · 私團體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 등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20條(年例報告書 등) ①委員會는 매년 3月 31日까지 委員會의 前年度活動狀況에 관한 年例報告書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大統領과 國會에

보고하고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例報告書를 國民에게 公表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特別報告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節 組織 및 운영

第21條(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の 人權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을 포함한 4人の 委員은 이를 常任으로 한다.

②委員은 社會的 信望이 높고 人權에 관한 識見이 있는 者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委員중 3人은 國會議長이 推薦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推薦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委員중 3人이상은 女性으로 任命한다.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議長과 大法院長이 委員을 推薦함에 있어서는 각 女性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 常任委員 1人을 指定하여야 한다.

⑦委員長 및 委員이 任期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 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第22條(小委員會) ①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3人の 委員으로 구성하는 小委員會로 하여금 審議·議決하게 할 수 있다.

1. 定款의 变경, 豫算 및 決算, 規則의 制定 및 改廢, 財產의 취득·처분 및 变경 등 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第17條第3項, 第28條第2項 但書, 第29條第4項, 第40條第3號 但書, 第44條第1項第1號 但書 및 第6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議決

3. 委員會의 종전 議決例를 变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小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委員會가 委員會에서 처리하도록 決定한 사항

5. 기타 委員會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사항은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것으로 본다.

第23條(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그 會務를 統轄한다.

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명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委員長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는 常任委員은 그의 이익과 委員會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委員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委員會의 規則이 정하는 常任委員이 委員會를 代表한다.

第24條(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25條(委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公務員(教育公務員을 제외한다)

4. 政黨의 黨員

5.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

②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

第26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身體상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遂行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刑의宣告, 懲戒處分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27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小委員會의 會議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委員會 또는 小委員會의 會議를 主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지명하는 者가 會議를 主宰한다.

第28條(委員의 除斥 · 기피 · 回避) 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陳情의 審議 · 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陳情의 當事者(陳情人 · 被陳情人 및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의 被害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경우

2. 委員이 당해 陳情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的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한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 · 議決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에게 忌避申請을 할 수 있으며 委員長은 當事者の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다만, 委員長이 決定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로 決定한다.

③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陳情의 審議 · 議決을回避할 수 있다.

第29條(事務處의 設置) ①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포함한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事務總長을 제외한 職員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任免한다.

⑤事務總長은 委員長의 명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소속 職員을 指揮 · 監督한다.

第30條(懲戒委員會의 設置) ①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懲戒委員會를 둔다.

②懲戒委員會의 구성, 權限, 審議節次, 懲戒의 종류 및 效力 기타 懲戒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第31條(職員의 身分保障) 委員會의 職員은 刑의宣告 · 懲戒處分 또는 委員會의 規則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退職 · 休職 · 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第32條(資格詐稱의 금지) 누구든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3條(秘密漏泄의 금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業務處理中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4條(유사명칭사용의 금지) 委員會가 아닌 者는 國民人權委員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5條(代理人의 選任) 委員長은 委員과 職員중에서 委員會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6條(委員會의 組織·운영 등)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委員會의 組織·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國家의 지원 등

第37條(公務員 등의 派遣)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教育機關 또는 研究團體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 등의 派遣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와 協議하여 그 소속 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派遣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派遣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派遣된 者에 대하여 人事·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8條(出捐金의 교부) ①國家는 委員會의 設立·施設·운영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에 出捐金을 교부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매년 出捐金豫算要求書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捐金豫算要求書를 調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요구·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財產의 寄附) ①法人·團體 및 개인은 委員會의 施設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委員會에 金錢 기타 財產을 寄附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받은 財產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第5章 調査와 救濟의 節次

第40條(委員會의 調査對象) 委員會는 다음 각號의 行위(이하 “調查對象人權侵害行爲”라 한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1. 搜查機關 등의 職員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의 職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行위
 - 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行위
 - 나.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押收 또는 搜索하는 行위
 - 다.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郵便物의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對話秘密을 침해하는 行위
 - 라.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他人의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摄影하여 公開하거나 그 秘密을 누설하는 行위
 - 마.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拘禁·保護施設의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懲戒 또는 懲罰하는 행위

- 바. 사람에 대하여 暴行·脅迫·拷問 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 사람을 公然히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는 행위
- 아.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權利行使를 방해하는 행위
2. 搜查機關 등의 職員과 共犯關係에 있는 者가 그 職員의 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第1號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3. 搜查機關 등의 職員이 아닌 政府機關의 公務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第1號各目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와 共犯關係에 있는 者가 그 公務員의 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第1號各目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委員會가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賛成으로 調查하기로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4.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차별행위

第41條(陳情人의 適格)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者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者는 委員會에 陳情할 수 있다.

第42條(陳情의 方式)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文書에 의할 수 없는 特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口述로 할 수 있다.

1. 陳情人의 姓名과 住所
2. 被陳情人의 姓名 기타 被陳情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 陳情의 취지와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

第43條(拘禁·保護施設 收容者 등의 陳情權 보장) ①拘禁·保護施設에 收容 또는 보호되어 있는 者가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때에는 拘

禁·保護施設의 職員은 그 陳情書 작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書의 작성을 허용한 職員은 그 陳情書를 委員會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그 接受證明書를 委員會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陳情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44條(陳情의 却下) ①委員會는 陳情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却下한다.

1. 당해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年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委員會가 調査하기로 議決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陳情이 委員會의 調査對象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陳情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匿名으로 陳情을 제기한 경우
 5. 被害者가 아닌 者의 陳情에 관하여 被害者가 調査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陳情人이 陳情을 취하한 경우
 7. 陳情의 취지가 당해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法院의 確定判決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반하는 경우
 8.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事案에 관하여 搜查, 裁判, 行政審判, 國會의 國政監察나 國政調查, 憲法裁判所의 審判이나 憲法訴願, 監察院의 監查,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苦衷民願 調查, 女性特別委員會의 男女差別事項 調查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家機關에서 權利救濟節次가 진행중인 경우,
 9. 委員會가 棄却한 陳情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陳情한 경우
-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을 關係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陳情을 移送받은 機關은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 결과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調查를 開始한 후에도 그 陳情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한 경우 그 陳情人은 그 却下事由가 消滅한 때에는 委員會에 다시 陳情할 수 있다.

第45條(調查의 開始) ①委員會는 陳情이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46條(調查의 目的) ①委員會의 調査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한 被害救濟를 目적으로 하여야 하며, 國家機關의 機能遂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查증인 事件의 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目적으로 調査를 하여서는 아니다.

第47條(調查의 方法) ①委員會는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에 대한 陳述書 제출요구
2.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의 출석요구 및 陳述聽取
3. 鑑定人の 지정 및 鑑定의 의뢰

4. 被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의 소속 機關·團體 등에 대한 關係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

②委員會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이나 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場所 기타 필요한 場所에서 關係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하여 實地調查를 하게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의 陳述을 聽取하게 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地調查를 받는 機關·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을 領置할 수 있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경우 당해 委員이나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内보여야 한다.

第48條(調查의 限界와 事實照會) ①委員會가 第47條第1項第4號, 同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國家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資料·물건 또는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確認書가 委員會에 제출된 때에는 委員會는 그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物件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할 수 없다.

1. 公開하면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등 國家의 中 대 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搜查 · 裁判 · 刑執行에 관한 資料나 물건으로서 公開하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진행중인 犯罪搜查 또는 繫屬중인 裁判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事件關係人の 名譽나 私生活의 秘密 또는 生命 · 身體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搜查方法상의 機密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資料 · 물건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에 照會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49條(陳情의 移送) ①委員會는 陳情에 관하여 다른 國家機關에서 처
 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陳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機關은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移
 送받은 陳情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
 여야 한다.

第50條(調查의 중지) 委員會는 陳情의 當事者나 參考人の 所在不明 또
 는 疾病 기타의 사유로 調查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解消될 때까지 調査를 중지할 수 있다.

第51條(緊急救濟措置의 권고) ①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후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蓋然性이 있고, 이를 放置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被害發生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에 대한 決定이전에 陳情人이나 被害者の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 · 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다음 각號의 措置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중지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被陳情人의 당해 職
 務로부터의 排除

3. 기타 被害者의 人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救濟措置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 · 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 · 團
 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은 그 권고를 받은 때부터 48時間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52條(合意勸告)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調査對象 人權侵
 害行爲가 있었다는 蓋然性이 인정될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合意를 권고할 수 있다.

第53條(調停節次의 開始) ①委員會는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第52條
 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는 당해 陳情을 調停에 회부할 수 있다.

②被害人과 被陳情人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回附 또는 調停申請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調停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4條(調停) ①調停은 調停節次의 開始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書에 기재한 후 被害者와 被陳情人이 記名捺印하
 고 委員會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成立한다.

②委員會는 調停節次의 開始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合意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陳情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陳情의 公平한 解決을 위한 決定(이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중지
2. 동일 또는 유사한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재발방지를 위한措置
3. 原狀回復 · 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④委員會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被害人 및 被陳情人은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 송달된 날부터 2週日이내에 異議를申請할 수 있다.

第55條(調停의 효력) ①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과 被害者 및 被陳情人이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申请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은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②委員會는 被害者나 被陳情人이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申请한 경우에는 被害者에게 다른 救濟手段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第56條(法律救助) ①委員會는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被害者の 申請이 있는 때에는 被害者를 위하여 大韓法律救助公團 기타 機關에 法律救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救助의 節次 ·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7條(救濟措置 등의 권고 및 意見表明)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고 救濟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 · 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第54條第3項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는 救濟措置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하는 過程에서 人權에 관한 法令 · 制度 · 政策 및 慣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의 長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被陳情人,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58條(陳情의 棄却)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棄却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被害回復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59條(告發 및 搜查依賴)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犯罪行爲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刑事處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다만, 被告發人이 軍人 또는 軍務員인 경우에는 소속 軍 參謀總長에게 告發 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면서 犯罪嫌疑에 대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搜查機關의 長에게 搜查를 의뢰할 수 있다.

第60條(意見陳述機會의 부여) ①委員會는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措置의 권고,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61條(決定의 통지) 委員會는 第4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중지,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救濟措置의 권고,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救助要請,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意見表明,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2條(調查 등의 非公開) 委員會의 陳情에 대한 調査·調停 및 審議는 非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이를 公開할 수 있다.

第63條(권고 등의 公表) ①委員會는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과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 등의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發 및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그告發 또는 搜查依賴의 대상인 嫌疑事實을 제외하고 當事者·罪名·搜查機關名·告發 또는 搜查依賴 日字만을 公表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 등을 公表하는 경우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개인의 姓名을 匿名으로 하는 등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64條(措置結果 등의 통보) ①委員會로부터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 第57條第1項·第2項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권고,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 檢察總長, 소속 軍 參謀總長 또는 搜查機關의 長은 권고·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로부터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 第51條第1項,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이 그 措置結果 등을 통보함에 있어서 委員會의 권고를 受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第65條(法務部長官에 대한 통보) 委員會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변경,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와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法務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66條(職權調查의 경우 準用規定) 第46條 내지 第57條, 第59條 내지 第65條의 規定은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權調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7條(調查·處理節次 등)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委員會의 調査 및 處理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罰則

第68條(人權擁護業務妨害)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하는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을 暴行 또는 霹迫한 者

2.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에 대하여 그 業務상의 行위를 强要 또는 阻止하거나 그 職을 辞退하게 할 목적으로 暴行 또는 霹迫한 者

3. 偽計로써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業務遂行을 방해한 者

第69條(虛偽陳情) 허위의 사실을 委員會에 陳情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0條(陳情書 작성 등 방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陳情書 작성을 허용하지 아니한 者

2.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陳情書를 委員會에 송부하지 아니한 者

第71條(人權委員 등 資格詐稱)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2條(秘密漏泄)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處理中 知得한 秘密을 누설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73條(賂物罪 등의 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3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4條(政治關與禁止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國家公務員法 第65條 및 第84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5條(過怠料)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정당한 이유없이 第4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정당한 이유없이 第47條第1項第4號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4. 정당한 이유없이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查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大統領은 이 法을 公布한 날부터 6月이내에 法務部長官의 추천으로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委員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작성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

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委員會에 그 事務를 引繼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委員會가 設立될 때까지 委員會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委員會가 이를 부담한다.

第3條(人權委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①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設立 당시 任命하는 委員중 大法院長이 推薦하는 常任委員 1人과 國會議長 및 大法院長이 推薦하는 非常任委員 각 1人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가 2年인 委員에 대하여는 任命狀에 그 任期를 명시하여야 한다.